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4. 12. 21.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1월 1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년 11월 25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10회(제2차정례회) 제3차 위원회(2004년 12월 9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 체계보호 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이 있어 정원총수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,275명으로 변경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2,50명으로 변경

다. 참고사항

-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- 1963(2004.9.6)
- 서울시 조직담당관 - 6484(2004.9.15)호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추진 관련 정원 승인 이첩통보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찬재)

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비해 재난의 개념을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인적재난 및 에너지, 통신, 교통, 금융, 의료,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, 갈등 상황에 대처하여 지역안정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정원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11. 15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재해보호 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이 있어 정원총수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,275명으로 변경
 - 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250명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-1963(204.9.6)호 및 서울시 조직담당관-6484(2004.9.15)호 국가기반재해보호업무 추진 관련 정원승인 이첩통보와 관련임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조 내용증 지방공무원의 총수 “1,274명”을 “1,275명”으로 변경
 - 1. 집행기관의 정원 : “1,249명”을 “1,250명”으로 변경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(안)
제2조 (정원의 총수)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,274명으로 하고,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249명 2. 생략		제2조 (정원의 총수)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,275명으로 하고,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250명 2. 현행과 같음		